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08.30

제2판: 2003년 1월 1일

개정5: 2013년 6월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 Post-clearance documentation

처 장(Director)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메디슨 애비뉴 380, M11023

뉴욕, NY 10017 USA

이메일: mineaction@un.org

전화: +1 (212) 963 1875

팩스: +1 (212) 963 2498

경 고

본 문서는 표지에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시리즈는 정기적인 재검토와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용자는 그 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 또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웹사이트 <http://www.mineaction.org>).

저작권 표시

본 유엔문서는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이며 그 저작권이 유엔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본 문서 또는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복제, 저장 및 전송할 수 없다(may).

본 문서는 판매할 수 없다.

Director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UNMAS)

380 Madison Avenue, M11023

New York, NY 10017

USA

Email: mineaction@un.org

Telephone: +(1212) 963 1875

FAX: +(1212) 963 2498

목 차

목 차	3
머리말	4
해설	5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	6
1. 적용범위	6
2. 참고	6
3. 용어, 정의, 및 약어	6
4. 요구사항	7
4.1. 제거 확인	7
4.2. 조사표지	7
4.3. 위험표지	7
4.4. 잔류 위험 및 법적 책임	7
4.5. 문서화	8
4.5.1. 완료 보고서와 이양 증서	8
4.5.2. 프로젝트 사후 검토	9
5. 책임과 의무	9
5.1. 국가지뢰행동기구	9
5.2. 지뢰제거단체	9
 부속서 A 인용(표준)	 10
부속서 B (참고)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를 위한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 사용지침	11
부속서 C (참고) 이양 증서 및 공식 선언 예시	12
개정 기록	13

머리말

인도적 지뢰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표준은 1996년 7월에 덴마크에서 개최된 국제기술회의의 워킹그룹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준이 지뢰제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고, 표준들이 제안되었고, ‘제거’의 새로운 보편적인 정의가 합의되었다. 1996년 후반에 덴마크에서 제안된 원칙은 유엔이 주도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개선되었고, 인도적지뢰제거작업의 국제표준 시리즈로 발전되었고, 그 초판이 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에 의해 1997년 3월에 출판되었다.

이런 초기표준의 적용범위는 이후 확장되어 지뢰행동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었고, 작업절차, 실천 및 규범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표준은 재정립되어, 2001년 10월에 발간된 제1판을 계기로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이라고 개칭되었다.

유엔은 표준 시리즈의 발전 및 유지를 포함하여 지뢰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려해야 할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그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발전 및 유지를 담당하는 유엔의 부서이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었다.

국제지뢰행동표준을 준비하고 평가하고 개정하는 업무는 국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의 지원을 받아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각 표준의 최신개정판은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적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지뢰행동의 규범과 실천을 반영하고, 국제적 규정과 요구에 따른 변경사항을 넣기 위해 최소 3년마다 재검토된다.

해 설

불발 자탄을 포함하여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ERW, Explosive Remnants of War)이 제거되거나 토지가 해제되면 대체로 그 토지를 지체없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역사적 토지권을 회복함으로써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제거 후 즉시 토지를 점유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다.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 지뢰제거단체는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뢰제거팀을 새로운 현장에 재배치하기를 바랄 것이다.

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공식적으로 제거되고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과 완료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특히, 모든 지뢰제거 사후 검사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좋고(should), 전환점과 중간 지점을 포함한 영구적 조사표지를 설치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모니터링 및 검사 보고서와 같은 모든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공식적으로 이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제거단체 또는 단체의 지명된 지역 사회소통 담당자는 해당 지역의 모든 지뢰제거 작업에 대한 세부정보와 남자, 여자 및 어린이가 받을 영향에 대한 정보가 지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반드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shall).

제거된 토지의 공식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 이양에 필요한 절차와 문서는 잔류 위험의 소유를 명확히 하고, 이양에 따른 기부자,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및 지뢰제거단체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표준은 제거된 토지의 이양을 위한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

1. 적용범위

본 표준은 제거된 토지의 이양을 위한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책임과 의무를 상세히 기술한다.

2. 참고

인용표준 목록은 부속서A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표준들은 본 표준에 인용되고, 본 표준의 일부 조항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3. 용어, 정의 및 약어

국제지뢰행동표준(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시리즈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약어를 정리한 전체 용어집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에 제시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해야 한다(shall)’, ‘하는 것이 좋다(should)’ 및 ‘할 수 있다(may)’는 준수의 정도를 표현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표준과 지침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다.

- 1) ‘해야 한다(shall)’는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2) ‘하는 것이 좋다(should)’는 선호되는 요구, 방법 및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 3) ‘할 수 있다(may)’는 가능한 방법 또는 방향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국가지뢰행동기구(NMA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라는 용어는 지뢰행동의 규정, 운영 및 조정을 위한 책임을 가진 폭발물피해국가에서 정부기관, 자주 부처연합위원회를 말한다.

참고: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유엔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지뢰행동센터(MAC, Mine Action Centre) 및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지고, 일부 또는 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할 수 있다(may).

4. 요구사항

4.1. 제거 확인

이양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서는 제거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shall). 제거는 두 단계로 달성되고 표명된다. 1단계에는 제거 프로세스 전과 프로세스 중의 지뢰제거단체 경영시스템 및 운영절차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2단계에는 표본추출에 의한 제거된 토지의 검사가 포함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은 모니터링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국제지뢰행동표준 09.20은 지뢰제거 사후 검사에서 채택할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및 지뢰제거 사후 검사 중에 생성된 보고서와 시정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검사를 이양 문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4.2. 조사표지

기술조사 중, 위험지역의 주변은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사표지로 표시되는 것이 좋다(should).

제거 중 얻은 추가 정보는 각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실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should). 해당 지역의 주변을 다시 규정하고 실제로 제거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영구적 조사표지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may). 파묻힌 금속 물체를 영구 표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새로운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으며(should), 전환점과 중간 지점의 좌표를 향후 참고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좋다(should). 비기술조사와 기술조사가 수행되고 해제된 지역들도 기록하는 것이 좋다(should).

4.3. 위험표지

어떤 이유로든 이양 전에 제거되지 않았거나 제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은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위험표지 체계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상적으로, 그런 지역은 견고한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벽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위험지역으로 부지중에 진입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should).

국제지뢰행동표준 08.40은 위험표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4. 잔류 위험 및 법적 책임

이것은 계약 협상 단계에서 국가지뢰행동기구와 함께 탐구해야 할 복잡한 법적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인도적 활동의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제거된 토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후에는

어떤 잔류 위험도 지뢰제거단체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거된 토지의 이양이 지뢰제거단체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hall).

민간 자본으로 조달된 상업적 개발을 지원하는 계약 작업의 경우, 계약은 어느 정도의 잔류 위험이 지뢰제거단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may). 그러면 그런 계약을 수락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지뢰제거단체에게 있다.

4.5. 문서화

4.5.1. 완료 보고서와 이양 증서

정보수집 및 기록은 제거작업 중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should). 가능한 경우,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IMSMA,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Mine Action)과 같은 표준, 입증된 정보관리시스템 및 지리(지역공간)정보시스템(GIS, Geographical [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완료 보고서 및 이양 증서의 작성을 위한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IMSMA) 사용에 대한 지침은 부속서 B에 제시되어 있다.

완료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 1) 위험지역 및 작업 식별 번호
- 2) 제거 요구사항 - 특정 지역 및 특정 깊이
- 3) 기술조사 보고서 사본(이용 가능한 경우)
- 4) 인정을 위해 참조할 사항을 포함한 제거 단체의 세부정보
- 5) 지역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및 장비에 대한 요약
- 6)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모니터링을 수행한 기관, 사용한 방법 및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세부정보와 함께
- 7) 지뢰제거 사후 검사 보고서. 검사를 수행한 기관, 사용한 방법 및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세부정보와 함께
- 8) 제거된 지역에 대한 세부정보: 전환점과 중간 지점의 좌표, 제거 중에 발견되거나 파괴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목록.
- 9) 비기술조사 및 기술조사를 통해 다루어지고 해제된 지역에 대한 세부정보
- 10) 제거 중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세부정보
- 11)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의 토지 최종 상태 인식에 대한 지뢰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공식 인정.

참고: 지뢰제거단체는 해당 작업이 완료되어 국가지뢰행동기구에 공식적으로 이양됐을 때 해당 지역사회와 제거된 토지의 수혜자로 제안된 이들에게 이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좋다(should). 이런 보고에는 주관적 신뢰 표명과 남성, 여성 및 아이들에게 잔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12) 알려진 지뢰지대에 대한 기록과의 비교

13) 특정 지역의 특정 깊이까지 토지가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식 선언(지뢰 영향을 받은 각 국가의 선언들의 세부 문구들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should), 제거된 토지 증서의 예시가 부속서 C에 제시되어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모든 완료 보고서, 이양 증서 및 뒷받침하는 정보의 보관자가 되는 것이 좋다(should).

4.5.2. 프로젝트 사후 검토 (PPR)

가능한 경우, 지뢰제거단체는 운영의 계획, 준비 및 제거 단계에서 획득한 교훈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작업이 아니라 계약에 대해) 공식적인 프로젝트 사후 검토(PPR)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should). 프로젝트 사후 검토는 장비, 절차, 훈련 및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should). 걱정되는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should). 프로젝트 사후 검토 요구사항은 기부자들과 국가 당국의 제거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프로젝트 사후 검토는 국가지뢰행동기구와 유엔(유엔지뢰행동조직(UNMAS), 유엔개발(UNDP) 및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및 기부자 또는 후원자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좋다(should). 프로젝트 사후 검토에서 기정의 장비나 절차,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의 단점이 드러나는 경우 프로젝트 사후 검토는 더 널리 배포되는 것이 좋다(should).

5. 책임과 의무

5.1. 국가지뢰행동기구

국가지뢰행동기구는 다음의 것들을 행해야 한다(shall).

- 1) 표준을 준비 및 발행하고 이양에 필요한 문서에 대한 지침을 제공
- 2) 이양 후, 문서를 유지하고 모든 완료 보고서, 이양 증서 및 뒷받침하는 정보들의 보관자로 활동
- 3) 당국, 단체들 및 현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제거 사후 문서는 국가기록보관소에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이 좋다(should).

5.2. 지뢰제거단체

지뢰제거단체는 상기 4.5조에서 상세히 기술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포함하여 제거된 지역의 이양을 위한 국가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shall).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없는 경우, 국가지뢰행동기구가 설립되는 동안 지뢰제거단체는 제거된 지역의 이양을 위한 국가 표준의 제정을 돕는 것이 좋다(should).

부속서 A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문서에는 본 표준의 본문에서 참고하거나 본 표준의 일부 내용을 구성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인용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인용문서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본 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의 인용내용에 기반을 둔 협약당사자들은 가능한 다음에 열거한 표준문서의 최신판을 찾아 적용하기를 권장한다. 인용날짜가 없는 경우는 표준문서의 최신판이 적용되었음을 말한다.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회원들은 유효한 현행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표준화기구(EN, European Normalisation)의 등록자격을 갖는다.

- 1)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 지뢰행동 용어, 정의 및 약어집
- 2) 국제지뢰행동표준 07.40 지뢰행동단체 모니터링
- 3)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 기술조사
- 4) 국제지뢰행동표준 08.40 위험표지
- 5) 국제지뢰행동표준 09.10 제거작업 요구사항
- 6) 국제지뢰행동표준 09.20 제거지역 검사: 샘플링 절차 사용 지침

본 참고문서들의 최신번역 및 최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hould).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GICHD, Geneva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itarian Demining)가 본 표준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표준의 사본을 보관한다. 국제지뢰행동표준, 지침, 참고자료의 최신번역 및 판본의 등록부는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가 관리하며, 국제지뢰행동표준 웹사이트(<http://www.mineactionstandar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지뢰행동기구,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지뢰행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본들을 입수하는 것이 좋다(should).

부속서 B (참고)

지뢰제거 사후 문서화를 위한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 사용지침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IMSMA) - 유엔이 지원하는 현장 프로그램의 중요 데이터 관리를 위해 유엔이 선호하는 정보 체계이며, 다른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보관, 보고, 정보 분석 및 프로젝트 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지뢰행동센터 직원에 의해 사용되지만, 모든 실행 단계에서의 지뢰행동 프로젝트와 지뢰제거단체의 실행자들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제거 활동 - 본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에 문서화할 수 있으며, 국가 요구사항에 따라 국가 양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참조한 진행 보고서는 해제되거나 제거된 지역, 또는 공식적인 제거작업의 일부가 아닌 제거된 장치를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제거 보고서는 동일한 지역에 대해 시작되거나 참조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제거작업을 기록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제거작업을 참조하는 진행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제거 사후 문서화 보고서(PCDR)는 제거 활동의 완료를 문서로 완성시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된다. 작업도구는 운영 관리자가 지뢰행동 활동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제거 확인 - 제거와 관련된 진행 보고서는 문서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제거 확인의 첫번째 단계 중에 효과적인 절차가 사용되었음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사 표지 - 최종적으로 정해진 제거된 지역의 주변은 제거 사후 문서화 보고서(PCDR)에 보관된다.

위험 표지 - 제거되지 않은 지역은 진행 보고서 및 완료 보고서에 문서화 할 수 있다.

문 서 화 - 주어진 작업과 관련되어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보고서는 최종 문서화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should).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작업도구는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서들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다. 이 작업도구는 관리자가 실행 기관에 배정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모든 관련 지뢰행동정보관리시스템(IMSMA) 보고서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부속서 C (참고)

이양 증서 및 공식 선언 예시

위 치		
1. 지도 이름:		8. 제거된 지역 위치(내용 및 Grid/ UTM) <i>제거된 지역의 지도 및 도해 포함</i>
2. (개정)판:		
3. 시트 번호		
4. 범위		
5. 시리즈		
6. 지역 이름		
7. 제거 깊이		
제거작업에 대한 세부정보		
9. 제거된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개수 및 종류	10. 되찾은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의 최종 폐기 방법	
11. 사용된 방법 및 기술	12. 지역 내 금속 존재의 유무	
13. 품질보증 방법		
14. 지뢰지대 일련번호	15. 완료 및 이양 날짜	
지뢰제거단체를 대표하여 진행된 이양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승인
16. 대표 이름 및 지위		17. 국가지뢰행동기구의 대표자 이름 및 지위
지뢰제거단체의 고위급 대표의 선언		
나는 본 완료 증서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특정 깊이까지 모든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내 지식과 신념을 다하여 증명한다.		나는 본 완료 증서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특정 깊이까지 알려진 모든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이 국가지뢰행동표준에 맞게 제거되었다고 평가되었음을 인증한다.
18. 지뢰제거단체 대표의 서명		19.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인장
국가지뢰행동기구의 승인		
나.....는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가지는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이 완료 증서에 명시된 특정 지역에 특정 깊이까지 지뢰 및 전쟁잔류폭발물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이해한다. 나는 또한 잠재적인 잔류위험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다.		20. 국가지뢰행동기구 대표의 서명

개정 기록

국제지뢰행동표준의 개정관리

국제지뢰행동표준 시리즈는 3년을 기준으로 공식적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또는 편집상의 목적을 위하여 3년 기간 이내에 개정된다.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에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래의 표에 번호, 개정날짜 및 일반적인 세부사항이 기록된다. 또한 개정내용은 국제지뢰행동표준의 표지에 편집일 아래 ‘통합개정번호 1 등’의 문구를 넣어서 표시한다.

각 국제지뢰행동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완료될 경우에 새로운 개정판이 발행될 수 있다 (may). 새로운 판의 최신 수정조항들은 새 판에 통합되고 정리된 개정기록표에 통합된다. 추가 재검토가 수행되면 개정기록은 다시 등재된다.

가장 최근의 국제지뢰행동표준은 웹사이트(www.mineactionstandards.org)에 등록되어 있는 개정판이다.

번호	일자	세부 개정 사항
1	2004.12.1	1. 포맷 변경 2. 사소한 글자 변경 3. 본 국제지뢰행동표준이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어, 정의 및 약어 변경
2	2005.7.23	1. 국제지뢰행동표준 04.10과 일치하도록 부속서 B, 이양, 품질보증 정의 변경 및 usable area 정의 삭제
3	2010.3.1	1. 전체적인 사소한 변화 2. 국가지뢰행동기구 정의 업데이트 3. 유엔지뢰행동조직 주소 업데이트 4. 부속서 B와 그 참고 삭제 5. 국제지뢰행동표준 8.22에 토지해제 개념 및 업데이트된 참고 갱신 6. 성별 및 다양성 문제의 포함 보장-그 효과에 대한 작은 추가 7.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속서 C를 B로, D를 C로 변경 및 두 부속서 내 사소한 변경
4	2012.8.1	1. 국제탄약과학기술지침서 개발 영향 검토 2. 국제지뢰행동표준 07.41 참고 삭제 3. 사소한 글자 수정
5	213.6.1	1. 국제지뢰행동표준 신규 토지해제 영향 재검토 2. 제목과 머리글에 포함된 개정 번호 3. 4.2항의 삭제된 용어(DHA) 4. 국제지뢰행동표준 08.20 기술조사 4.2조와 부속서 A 참조 업데이트 5. 부속서 C 사소한 수정